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75

발의연월일: 2021. 2. 17.

발 의 자: 강기윤・박성중・엄태영

이종성 • 구자근 • 최형두

김희국 • 권명호 • 이명수
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"농업생산기반시설"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농업의현대화,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에도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 할 수 있는 "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"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.

현재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단순 서류철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설중복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, 시설설치 후 노후화된 기반 시설의 안전관리 미비, 가뭄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, 수질 오염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·관리·운영상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또한 지자체가 시설의 효율적·과학적 관리를 위해 "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"를 구축하려 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예산마련 및 용역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따라서 "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"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설치·관리·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,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, 수질오염저감,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,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·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설치·관리·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(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).
- 나.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를 위해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).
- 다.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 장이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는 경우 농업생산시반시설에 대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 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8조의3(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
	체계 구축·운영) ① 시장·군
	수・구청장이 제2조제6호에 따
	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
	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
	등록 및 관리하는 경우 농업생
	산시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
	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
	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
	시설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한
	<u>다.</u>
	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제1
	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정
	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
	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
	<u> 지한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
	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
	축범위 및 운영절차,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
	<u>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